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신장식 · 최혁진 · 강경숙
서왕진 · 차규근 · 김선민
한창민 · 박은정 · 김준형
이해민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3조제4항 등).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4항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중앙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으로, “받게 할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
2.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중앙회 및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3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5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및 순자본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감독) ① ~ ③ (생 락)	제123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u>	④ <u>중앙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u> ----- ----- ----- <u>받아야 한다.</u>
<u><신 설></u>	1. <u>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u>
<u><신 설></u>	2. <u>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u>
제134조(과태료) <u><신 설></u>	제134조(과태료) ① <u>중앙회 및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3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①</u> · <u>②</u> (생략)	<u>②</u> · <u>③</u>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u>④</u> · <u>⑤</u> (생략)	<u>④</u> · <u>⑤</u> (현행과 같음)